



# 문화체육관광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  
(경유)

제 목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,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2018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 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협 조 사 항 >	
○	<p>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·교육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을 안내</li> <li>* <b>저작재산적 권리</b>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<b>침해</b>할 경우 <b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</b>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</li> <li>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</li> <li>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</li> </ul>
○	<p>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</li> </ul>
○	<p>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</li> <li>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‘복스캔’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</li> <li>-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</li> <li>-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</li> </ul>

끝.

